

【문 1】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 ②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령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유효로 볼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문 2】 법인의 대표기관, 이행보조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인 법인과 함께 대표기관 개인도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문 3】 조합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해산으로 선임된 청산인에 대하여 조합원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②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 ③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 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4】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문 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였던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③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6】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세권 소멸시 목적부동산의 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연히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 7】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던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문 9】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②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여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 ④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문10】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문11】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④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12】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 ③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민법 제109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문14】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③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1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는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문16】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④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문17】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④ 채무의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1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하므로,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③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관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9】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 ②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소멸된다.

【문2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에 있으면 되고,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과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문2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③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 ④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 ③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문2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주장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1심에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성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2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문서 또는 제3자 작성의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백지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제출자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문서작성자의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더라도, 서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② 항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항소권을 포기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문26】 소장심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 원고가 송달료예납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단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후 개개의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소송계속 자체를 위한 최초의 소송절차인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이 나중에 판명되어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간이 지정된 바 없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 ㉣ 원고가 소장에 대한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위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 주소보정명령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못한 것이 주소를 알 길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라 하여도 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문27】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원인은 변론종결 뒤의 사유에 한하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 ③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참여관은 제3자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등의 보정권고를 한다.
- ④ 청구이의의 소 제기 없이 한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위 규정의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문28】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각하판결 확정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 ③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문29】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하더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 ③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한 통상공동소송이다.

【문30】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에서 1회,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③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그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 변론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1】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③ 상고심에서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
-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3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합산의 법칙을 적용하되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심급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불법행위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과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가 적극적 손해 1억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나, 소극적 손해 중 3,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나, 국가가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3】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지상건물철거, 퇴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소유사실, 피고의 토지점유사실인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②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까지 미치는 미치지 않는다.
- ③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34】 변론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판결선고기일에 법원이 바뀔 때에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④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에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문35】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고, 그 기판력은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 ㉣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6】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무능력자 본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 ③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인의 증인대동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현출절차는 법원이 서면증언의 도착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한다.

【문37】 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한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②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마찬가지로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도 미친다.
- ③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더라도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38】 소송상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 ㉣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고, 재심의 소에 있어서도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9】 등기관원청구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사유가 절대적 무효사유(위조 등)이면 원고는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가 절대적 무효임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착오 등)이면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사유 외에 전등자가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4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그러나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고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고,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도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④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에 의하여 할 수 없다.